#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01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정희용·고동진·김선교

박충권 • 박준태 • 유용원

주호영 • 백종헌 • 최수진

김기현 • 박덕흠 • 강명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고,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생업의 터전이 파괴되고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지진, 산불,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재기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9조의2(재해로 인한 피해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
	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
	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